

18세기 후반 犯罪의 통계적 분석

—『審理錄』을 중심으로—

심재우*

목 차

- I. 머리말
- II. 『審理錄』의 자료적 성격과 범죄분석 시각
- III. 『審理錄』 수록 死刑犯罪의 사례 분석
 - 1. 범죄의 연도별·지역별 분포
 - 2. 범죄의 유형과 특징
 - 3. 범죄인의 신분과 직역
 - 4. 재판기간과 형량
- IV. 맺음말

[국문요약]

이 논문은 18세기 후반 死刑 대상 범죄 1,112건에 대한 국왕 正祖의 審理 기록을 모은 책자인 『審理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동 시기 범죄 양상과 정부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심리록』 통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조가 재위 기간 동안 심리한 사건은 모두 1,112건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가장 많은 185건이었다. 그렇지만 인구수 대비 범죄 비율은 서울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 범죄의 유형은 人命犯罪(90.3%)를 비롯하여 經濟犯罪(6.7%), 官權侵害犯罪((1.9%), 社會風俗犯罪(1.2%)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범죄 발생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범죄인의 신분은 平民層 77.7%, 賤民層 8.1%, 中人·吏鄕層 7.3%, 兩班層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6.9%로 집계되어 평·천민층이 범죄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이 관에 접수 되어 국왕 정조에게 보고되기까지는 평균 26.5개월이 걸렸으며, 총 재판기간은 평균 41.8개월로 확인되었다. 또한 刑量은 死刑 3.2%, 減刑 44%, 釋放 30.8%, 物故 8.9%, 기타 등으로 집계되어 정조가 사형 범죄인에 대해 減刑과 釋放 위주의 판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정조대 『심리록』 수록 범죄 양상과 처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대립이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정조는 이들 사형 범죄인에게 엄벌이 아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변동기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審理錄, 死刑犯罪, 審理, 判付

I. 머리말

한국사에서 조선후기는 조선왕조 사회의 해체 양상, 그리고 근대사회로의 이행의 특질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조선후기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동안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의 조선후기 연구에서는 민의 일상적 모순과 갈등을 적극 분석하려는 시도가 적었다. 또한 조선왕조 사회구조와 통치방식의 핵심을 담은 법과 사법기구, 기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작동하는 권력과 권위체계의 성격 등에 대한 고찰이 충분하지 않았다.

본고에서 필자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사회변화에 따른 민의 동향을 犯罪를 통해 접근하기 위해 正祖의 死刑犯罪 처벌 기록을 모은 『審理錄』을 분석하고자 한다. ‘審理’란 死罪 특히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죽은 자나 살아 있는 범인이 억울한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명확히 진실을 밝히는 절차를 뜻하는 우리의 고유 용어이다.¹⁾ 조선시대에 死刑에 대한 판결은 오직 국왕만이 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심리록』은 死刑에 해당할만한 중한 범죄에 대한 국왕 正祖의 審理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심리록』과 관련한 최초의 연구는 1981년 미국의 법사학자 윌리엄 쇼에 의

1) 朴秉濂, 「해제」, 『심리록』 1(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1998), 2쪽.

해서 이루어졌다. 쇼는 조선시대 법문화와 법규범의 해석을 위한 방법론으로 형사재판기록에 주목하였다. 쇼의 연구가 다루는 범위는 조선시대 법개념, 사법제도와 형사재판절차, 법사상, 법에 비추어진 사회상 등 매우 다양하다. 그는 조선시대 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리록』의 전체 판례 가운데 正祖가 1776년부터 1785년 사이에 심리한 사건 가운데 임의로 100건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²⁾ 그의 목표가 조선시대 ‘법’의 특질 해명에 있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결여하고 있고, 사회변동 속에서의 법과 국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연구는 법의 해석을 법전이 아닌 판례의 분석을 통해 시도했다는 점, 사건 판례를 통해 조선후기 현실 속의 법규범과 사회상을 해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적지 않다.

1980년대에 이미 국외에서 『심리록』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음에 반해 국내의 『심리록』 연구는 아직 제한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심리록』의 자료적 특징과 성격에 대한 기초적 접근은 1990년대 권연용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에 의해 『심리록』의 체제, 범죄의 유형과 판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³⁾ 이후 1998년부터 『심리록』의 國譯 사업이 民族文化推進會에서 시작되었고 박병호에 의해 『심리록』의 편찬과정, 현존하는 異本の 특징에 대한 상세한 해제가 나왔다.⁴⁾ 그렇지만 『심리록』 수록 서울 범죄만을 뽑아서 조선후기 변화의 정점에 있었던 서울의 도시적 변모와 범죄 양상을 관련해서 설명해보려는 연구,⁵⁾ 『심리록』에 실린 정조의 判付를 추출하여 국왕의 법의식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 연구가⁶⁾ 몇 편 제출되었을 뿐 아직까지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

2) William Shaw, "Legal Norms in a Confucian Stat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1981.

3) 權延雄, 「『審理錄』의 기초적 검토: 正祖代의 死罪判決」,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下) - 朝鮮時代篇·近·現代篇』(一潮閣, 1994).

4) 朴秉濠, 앞의 해제.

5)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 분석을 통해 18세기 후반 서울의 사회상을 살펴본 연구는 趙珖, 「18세기 전후 서울의 犯罪相」, 『典農史論』 2(서울시립대학교, 1996)와 심재우,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 『서울학연구』 17(서울학연구소, 2001)을 들 수 있다.

의 특징과 正祖의 判付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아직 시도된 바 없다.

『심리록』은 18세기 후반 다양한 사회적 갈등·일탈의 양상, 국왕의 판결 기록 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조선후기 사회동향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특히 사회변동기 모순의 실체, 민의 일상적 삶의 갈등·일탈 등 절박한 내용을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록』이 아직까지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것은 한국사에서 범죄, 범죄사, 범죄통제와 관련한 분석틀, 방법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심리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18세기 후반 범죄 양상과 그 처벌 내용이 갖는 의미를 개괄적으로 서술해보고자 한다.⁷⁾

II. 『審理錄』의 자료적 성격과 범죄분석 시각

『심리록』은 正祖가 代理聽政을 하던 1775년 12월부터 사망한 1800년 6월까지 직접 審理한 重罪囚에 대한 사건 내용과 그 처리과정을 요약하여 기록한 일종의 刑事判例集이다. 御製 편찬 작업의 일환으로 정조의 判付 중심으로 만들어진 본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사형 대상 범죄인에 대한 국왕 정조의 심리 내용을 지역 및 연도순으로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리록』은 현재 여러 종류의 판본이 전해지는데, 본고에서는 그 가운데 年度別·道別로 일목요연하게 사건 내용을 살필 수 있는 규장각 소장 <규 1770>본을 주 자료로 활용하였다.⁸⁾

-
- 6) 정순옥, 「정조의 법의식: 『審理錄』 판부를 중심으로」, 『全南史學』 21(전남대, 2003).
 7) 본고는 『심리록』 수록 사형범죄의 분포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치중하였다. 각 범죄 사례가 갖는 의미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고찰은 심재우, 「『審理錄』 研究: 正祖代 死刑犯罪 처벌과 社會統制의 변화」(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5) 참조.
 8) 현존하는 『심리록』은 여러 異本이 존재하며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자세한 것은 박병호의 앞의 해제 참조). 『심리록』 판본 가운데 본고에서는 기록이 가장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규장각 소장 <규 1770>본(16책, 필사본)을 기초 자료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다른 판본으로 내용을 일부 보충하였다. 한편 정조의 대리청정은 1775년 12월부터 시작되지만, 『심리록』에

『심리록』에는 모두 1,112건의 사건이 연도별, 군현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다. 각 사건은 크게 ① 범죄가 발생한 郡縣名(서울은 部名)과 범죄인 성명, ② 사건 개요, ③ 觀察使와 刑曹의 조사 보고인 道啓와 曹啓, ④ 국왕 正祖의 判付 순으로 적었다. 먼저 사건 개요에는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피해자, 사망 일자, 사건이 관에 접수된 시기[成獄 年月] 등을 기록하였으며,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상처와 직접적인 사망 원인[實因]을 추가로 적었다. 다음으로 道啓와 曹啓는 사건에 대한 관찰사와 형조 堂上의 의견서에 해당하는데,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당연한 일이지만 道啓가 없다. 그리고 ‘判付’는 범죄에 대한 국왕 정조의 판결문으로서, 정조가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조사를 명령하거나 심리를 완료하여 형량을 선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증거를 확인하고 범죄인을 확증하기 위해 계속되는 수사, 심리로 曹啓와 判付가 한번에 그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심리록』의 자료가치는 첫째 자료의 시계열성과 완전성을 들 수 있다. 『심리록』에는 정조대의 사형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범죄가 연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찍부터 국왕 정조가 刑政에 관심을 갖고 옥사의 심리 기록을 정리해두도록 지시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빠짐없이 망라되어 있다. 조선시대 범죄 통계가 가능한 훌륭한 형사판례집인 셈이다. 둘째 체제의 일관성이다. 『심리록』은 하나의 사건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편집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피해자, 사망원인, 사건의 처리 연월 등을 정리하는데 용이하며, 이같은 장점은 자료의 계량화와 통계 처리를 가능케 한다.

그런데 『심리록』에 수록된 사건이 정조대에 처리된 범죄 전체를 망라하는 것은 아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시대에 극형인 死刑 범죄를 제외한 流刑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지방의 관찰사, 서울의 형조·한성부에서 자체 처결하였다.⁹⁾ 또 하나 정치범과 강상죄인에 대한 사건도 『심리록』에는 빠져 있다. 관

실린 정조의 판부는 1776년 1월부터 확인된다. 따라서 정확히 말한다면 『심리록』은 1776년 1월부터 1800년 6월까지 정조가 심리한 사건을 모은 책이다.

9) 『經國大典』 권5, 刑典 “推斷”, “凡拷訊 取旨乃行 外別報觀察使 本曹開城府觀察使 流以下直斷

료들이 연루된 정치범, 노비가 주인을 시해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시해하는 등의 綱常 죄인은 의금부에서 관할하였고, 鞫廳을 통해 심리가 진행되어 『推案及鞫案』 등 별도의 책자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심리록』에는 일반 형사범 가운데 국왕의 심리를 거쳐야 하는 사형 죄수들에 대한 사건만 수록되어 있다. 사실 정조대 범죄 분석을 위해서는 『심리록』 수록 사건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의금부에서 관할한 國事犯, 형조·한성부에서 直斷한 범죄 사건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형조·한성부에서 처리한 범죄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현재 충분히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통계 처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의금부 관할 國事犯의 경우도 별도의 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심리록』 수록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여 범죄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덧붙여서 『심리록』 분석과 관련하여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지적한다. 첫째 정조대 발생한 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는 거의 예외 없이 『심리록』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순조대 다산 정약용의 언급에 의하면 지방 고을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도 관리들이 檢驗하는 과정에서 토색질하는 등 큰 해독을 끼치기 때문에 민간에서 사건을 관에 고발하려 하지 않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는 살인의 10에 7, 8은 숨긴다고까지 극언을 하고 있다.¹⁰⁾ 그의 표현대로 조선시대에 실제로 官의 처리를 거치지 않고 민간에서 처리하는 ‘私和’가 어느 정도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살인 사건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옥사로서 국왕에게까지 보고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관에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실제로 그렇게 많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정조는 刑政에 대한 관심이 컸고 관련 기록도 충실하게 남겼다는 점에서, 정조대 사형 죄수에 대한 심리 내용을 담은 『심리록』은 사건을 비교적 빠짐없이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심리록』 수록 사건에 대한 수사는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계 처리한다. 오늘날도 범죄 수사가 반드시 진실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었듯이 조선시대 사건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各衙門 筭以下直斷.

10) 『譯註牧民心書』 V, 刑典 「斷獄」.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刑量이 갖는 의미를 이야기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통계 처리할 때 수사 기록은 대체로 범죄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이제 『심리록』 범죄 통계 처리 항목과 주안점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범죄의 연도별,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였고, 지역별 범죄 발생의 특징,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범죄의 차이 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둘째 범죄의 유형, 범죄 발생의 원인을 분류하여 계량화하였다. 범죄의 유형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명 사건[殺獄]과 기타 범죄[非殺獄] 두 가지로 구분하되, 기타 범죄는 다시 경제범죄·관권침해범죄·사회풍속범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셋째 범죄인의 신분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성별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어떤 신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조선 후기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넷째 재판기간, 형량 분포도 빠짐없이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사형 죄수에 대한 처벌은 국왕의 고유권한이었다. 『심리록』의 형량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당대인의 범죄에 대한 인식, 처벌에 나타난 국왕 正祖의 정치사상의 특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Ⅲ. 『審理錄』 수록 死刑犯罪의 사례 분석

1. 범죄의 연도별·지역별 분포

이제부터는 『심리록』 수록 1,112건의 범죄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범죄 통계 작업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수행하였는데, 범죄의 연도별·지역별 분포, 범죄의 유형, 범죄인의 신분·직역, 재판기간과 형량 순으

로 각각의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를 연도별, 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아래 <표 1>이다. 편의상 강화, 개성, 광주, 수원 등 4개 留守府는 경기도에 포함시켰다. 1775년 12월부터 1800년 6월까지 24년 6개월 동안 정조는 모두 1,112건의 사형 범죄를 심리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1년에 평균 45.4건, 매달 3.8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표 1> 범죄의 연도별·지역별 분포

연도	강원	경기	경상	서울	전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총 합계
1776				5		4	5	2		16
1777	1	1	3	8	1		1	1	2	18
1778		2	1	6	1	1	3	1	1	16
1779	4	11	8	7	11	5	9	1	14	70
1780		4	2	14	1		7		4	32
1781	4	9	20	2	39	14	7	4	5	104
1782	4	8	12	13	8	4	9	3	3	64
1783	3	7	13	5	12	16	17	1	9	83
1784	5	9	14	11	15	9	10	4	16	93
1785		6	8	1	13	14	17	3	10	72
1786	2	3		5		1	1	1		13
1787		2	7	2	9		6		3	29
1788			3	1	1				4	9
1789	1	10	17	20	11	11	12	3	3	88
1790	4	3	6	10	8	14	14	4	30	93
1791				3	4	1				8
1792				3		7		3		13
1793	1	2		5	14		1	1		24
1794	5	1	15	8	9	5	2	1	5	51
1795		4	7	6	2	2	3	1		25
1796	1	5		5		3	10	3		27
1797	2	17	13	6	12	10	7		12	79
1798		9	8	4		8		1		30
1799		3	3	6	9		2	2	7	32
1800		1	5	5	5	2		1	4	23
총 합계	37	117	165	161	185	131	143	41	132	1,112

먼저 확인하고 싶은 점은 1,112건의 범죄가 양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정조대를 제외하고 범죄의 연도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으로 정태헌의 연구를 예로 들 수 있다. 정태헌은 조선 건국 직후부터 성종연간에 이르는 103년(1392~1494) 동안에 사형죄를 지어 3회에 의해 국왕의 최종 판결이 난 범죄인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추출하여 분석하였는데, 그가 확인한 범죄인은 2,045명이었다.¹¹⁾ 이를 평균하면 1년에 19.8명의 사건을 심리한 것이 된다. 조선초기 실록 기록의 정확성 여부, 분석 방법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단순 비교하기에 우리가 따르지만, 15세기 1년 평균 19.8명에 비해 정조대 1년 평균 46.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소간의 오차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정조대에는 조선초기에 비해 사회가 좀더 복잡해지고 갈등과 일탈 양상도 증가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조대의 범죄 추이가 조선후기 전체적인 범죄의 증가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심리록』 범죄는 정조가 최초판부를 내린 연도별로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표 1>에 적힌 숫자는 연도별 범죄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표 1>의 숫자는 정조의 연도별 최초 판부 건수를 의미한다.

표에서 확인한 연도별 특징을 지적하면 정조 재위 기간 가운데 특정 몇 개 연도에 집중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조는 1781년, 1783년, 1784년, 1789년, 1790년, 1797년에 다른 연도에 비해 상당히 많은 범죄를 심리하고 있다. 이 해에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먼저 정조는 즉위한 지 5년 뒤인 1781년부터 2~3년에 걸쳐 사형 죄수에 대한 심리에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즉위 직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국정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른 시기이다. 다음으로 1789년, 1790년에 심리가 많이 진행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 안팎의 경사와도 관

11) 鄭泰憲, 「朝鮮初期 社會犯罪에 관한 研究」(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88), 22~25쪽.

런이 깊다. 1790년에는 정조의 둘째아들인 元子(어머니는 綏嬪朴氏, 훗날의 純祖)가 태어나고, 이웃한 청나라에서도 乾隆帝의 八旬을 기념하여 사면 조치가 내려졌다. 이같은 나라 안팎의 경사로 정조는 죄수에 대한 심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죄수들을 석방하였다. 이후에는 정조가 사망한 1800년까지 전체적으로 앞 시기에 비해 심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다만 1797년에 또 한번 많은 죄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였다.¹²⁾

이제 범죄의 지역별 분포를 보자. 범죄가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는 전라도(185건), 경상도(165건), 서울(161건), 평안도(143건)의 순이며, 강원도(37건)와 함경도(41건)가 가장 적었다. 특히 서울 범죄는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새로운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흥미를 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보다 세분해서 군현별로 살펴보면 경상도의 대구(12건), 경주(10건), 충청도의 공주(16건), 충주(13건), 경기도의 양주(11건), 광주(10건), 황해도의 해주(18건), 봉산(17), 재령(12건), 안악(11건), 황주(10건) 전라도의 전주(21건), 순천(14건), 광주(12건), 평안도의 평양(20건), 의주(12건), 용강(10건) 등이 1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일종의 범죄 다발 지역이었다. 대체로 각도의 행정 중심지이거나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황해도의 봉산, 재령, 안악, 황주, 평안도의 용강에서 보듯이 인구수만 가지고 해석하기 힘든 예외적인 사례도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범죄의 지역별 분포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도별 인구수와 범죄 건수를 도표화한 것이 <표 2>이다. 표에 나오는 도별 인구수는 『戶口總數』에 나오는 1789년 도별 口數를 의미한다.¹³⁾

12) 정조의 죄수 심리의 특징, 최종판부 연도별 형량 분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재우, 앞의 논문 참조.

13) 호적대장이 당시의 戶와 口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못했으며, 당연히 『戶口總數』의 戶와 口도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호구총수』에 나오는 각도별 口數가 동일한 비율로 과소평가된 것으로 파악하여 인구수 대비 범죄심리율을 구하였다.

〈표 2〉 1789년 도별 인구수 및 『심리록』 수록 범죄 건수

	서울	경기	경상	전라	충청	강원	황해	평안	함경	계
인구수	189,153	642,069	1,590,973	1,220,804	868,219	332,256	567,813	1,296,044	696,275	7,403,606
비율(%)	2.6	8.7	21.5	16.5	11.7	4.5	7.7	17.5	9.4	100
범죄건수	161	117	165	185	131	37	132	143	41	1,112
비율(%)	14.5	10.5	14.8	16.6	11.8	3.3	11.9	12.9	3.7	100
범죄비율/ 인구비율	5.7	1.2	0.7	1.0	1.0	0.7	1.5	0.7	0.4	1

위 표를 통해 우리는 인구수를 고려해볼 때 범죄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은 서울, 황해도, 경기도 순이며, 범죄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함경도, 강원도, 경상도, 평안도 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인구수가 전체의 2.6%에 불과하지만 범죄건수는 14.5%에 달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범죄비율이 무려 5.7배로 매우 높았다. 서울 인근 지역인 황해도, 경기도도 평균보다 범죄비율이 높았다. 살인 등 강력범죄가 가장 잦은 지역은 서울 등 수도권이었던 셈이다. 이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서울은 군주가 거주하는 王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범죄 검거율이 높았을 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조선후기 서울과 주변 지역의 도시화와 유민의 이입 등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와 사회적 갈등이 보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고 국가의 범죄 통제 시스템도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범죄의 유형과 특징

『심리록』에는 어떤 유형의 범죄가 많이 일어났는가?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는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권력 측에서 보았을 때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들이다. 이같은 범죄는 최고 권력자의 단죄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 절차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나타낸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조선왕조 실정 형법 속에 많은 행위 유형이 예시되어 있지만, 법규 속에

담긴 행위가 곧바로 실제로 발생한 범죄 양상을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범죄 통계는 그런 점에서 기층 사회의 단면과 삶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보여줄 수 있다.

사실 『심리록』에 수록된 다양한 범죄를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범죄를 보는 관점과 관련이 깊다. 필자는 범죄가 해당 사회의 인적 관계망과 사회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범죄를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먼저 『심리록』에 수록된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살인 등 인명 범죄이다. 인명 사건은 당시에는 殺獄이라고 하였는데, 살인 이외에 자살도 포함된다. 살인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인륜적 행위로 인식되어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예외 없이 최고의 형벌을 가함으로써 범죄인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고자 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과정이었다. 인명 사건이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발생하였는지는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심리록』의 중요한 범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인명 사건이 아닌 것들은 非殺獄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사건은 인명 사건에 비해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내용 검토 과정에서 국왕의 권위, 관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행위를 반영한 관권침해범죄, 사유재산의 침해와 경제적 문제를 둘러싼 일탈 행위에 해당하는 경제범죄, 그밖에 성리학적 사회윤리와 사회질서 위반 행위인 사회풍속범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범죄 유형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좀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분류를 시도하였다.

〈표 3〉 범죄의 유형

유형	非殺獄			殺獄	총 합계
	經濟犯罪	官權侵害犯罪	社會風俗犯罪	人命犯罪	
건수	74	21	13	1,004	1,112
비율(%)	6.7	1.9	1.2	90.3	100

이렇게 해서 『심리록』 수록 범죄 1,112건을 인명범죄, 관권침해범죄, 경제범죄, 사회풍속범죄로 구분하였는데, 유형별 범죄 건수와 비율을 정리한 것이 <표 3>이다. 표에서 보듯이 인명 범죄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004건(90.3%)으로 확인되었다. 이 당시 사형 죄수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던 셈이다. 인명범죄를 빼고는 경제범죄가 74건(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제범죄는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관련해서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는 그 숫자가 사실 미미하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심리록』 수록 범죄는 해당 사회에서 발생한 범죄 중 사형범죄자에 대한 기록만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사형범죄자 가운데 정치범 등 특수한 범죄인도 제외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범죄 양상 전반을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표 4> 세부 유형별 범죄 건수

범죄 유형	세부 유형	내용	합계
經濟犯罪	賦稅作奸(2)	관곡 등 賦稅의 횡령과 포획	74
	詐稱(7)	관리를 사칭하고 재물의 偷食과 갈취	
	偽造(52)	御寶, 紅牌, 관청문서 위조 및 판매	
	竊盜(13)	왕실 및 관용 물품에 대한 절도	
官權侵害犯罪	官長謀害(9)	수령에 대한 직접적인 시해 기도	21
	陵寢作變(4)	王陵의 기물 절도 및 방화, 실화	
	守令誣告(6)	수령에 대한 誣告, 匿名書 게시	
	殿牌作變(2)	수령 축출을 목적으로 客舍의 殿牌 파손	
社會風俗犯罪	掘塚(1)	무덤을 파고 시신을 훼손하는 행위	13
	禁令違反(3)	宮禁, 邊禁 등에 대한 위반 행위	
	誣告(4)	남을 死刑에 해당하는 죄로 무고한 행위	
	邪學崇拜(1)	西學을 신봉하여 제사를 폐하고 神主 불사름	
	失火(1)	관공서에 대한 失火	
	妖言惑衆(1)	妖言으로 대중을 선동한 행위	
	咀咒(1)	咀咒로 사람을 죽게 한 행위	
	脫獄傍助(1)	죄수의 脫獄을 방조한 행위	
人命犯罪	殺人(964)	故殺, 過失致死, 事故死	1,004
	自殺(40)	自殺, 威逼致死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한 범죄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세분화해 본 것이 <표 4>이다. 먼저 인명범죄는 살인¹⁴⁾과 자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살인이 인명사건의 대부분인 96%(964건)를 차지하고, 4%(40건)가 자살이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시 및 수사를 통해 자살과 타살 여부를 밝혀내기 전까지 매우 복잡하고 주의 깊은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자살로 결론이 나더라도 당대인의 관념상 사망한 사람의 자살 동기를 제공한 자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으로 간주하여 국왕의 심리를 거쳐 처벌하였다.

인명사건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경제범죄의 유형으로는 僞造, 竊盜, 詐稱, 賦稅作奸 등이 있다.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절도와 함께 공문서 위조와 관리 사칭, 부세 작간 등을 통한 사기·횡령 행위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피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모두 경제범죄로 분류하였다. 이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조(52건)는 대부분 御寶 및 공문서 위조 행위이다. 위조 행위는 조선초기부터 있었지만, 경제범죄에서 위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볼 때 조선후기에 오면서 어보를 위조하여 紅牌, 教牒 등을 위조하는 범죄가 서울을 중심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성행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그밖에 관물에 대한 절도, 세곡에 대한 포획, 관리를 사칭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의 경제사범도 몇 건 확인된다.

다음으로 관권침해범죄로 분류한 행위는 구체적으로 수령 등 관장의 시해·축출을 기도하는 행위인 官長謀害, 守令誣告, 殿牌作變, 그리고 국왕과 왕실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는 陵寢作變 등이다. 이같은 범죄는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국왕과 그 대행자인 관리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을 표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관권침해범죄 전체 21건 중에는 관장모해(9건)와 수령무고(6건) 행위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세 문제, 기타 수령의 통치 행위에 노골적인 불만을 품고 관장의 살해를 기도하거나, 궁궐문에 수령에 대한 비난글을 게재하여 수령의 축출을 도모한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14) 살인의 경우 고의 살해, 사고사, 과실 치사 등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심리록』에 실린 범죄의 경우 정조의 判付 이외는 내용을 요약하여 신고 있기 때문에 살인 사건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살인의 유형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사회풍속범죄는 모두 13건인데, 誣告, 禁令違反, 邪學崇拜, 妖言惑衆, 咀呪, 掘塚, 失火, 脫獄傍助 등이다. 사실 사회풍속범죄는 별도로 분류하기에는 건수가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관권침해범죄와 경제범죄에 넣어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주인을 무고한 사건이나 천주교 관련 사건은 조선사회의 유교적 윤리체계를 뒤흔드는 중대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끼친 사건이었다.

범죄의 유형과 관련한 내용을 좀더 살펴보기 위해 범죄 발생의 지역별 특징을 도표화한 것이 <표 5>, <표 6>이다. 먼저 <표 5>는 각도별로 발생한 범죄의 유형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사건은 전라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경상도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경제범죄 74건의 상당수가 서울(50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앞서 범죄의 지역별 분포를 다루는 과정에서 언급하였듯이 서울은 여타 지역에 비해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율이 매우 높았는데, 범죄의 유형에서도 위조 등 경제 관련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서울의 도시적 변모 양상과 관련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 외에 경제범죄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평안도와 경상도를 들 수 있다. 즉 표에서 보듯이 평안도에서 9건, 경상도에서 8건의 경제범죄가 발생하였다. 또 하나 관권침해범죄와 사회풍속범죄도 역시 서울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방금 이야기하였듯이 서울이라는 공간이 갖는 특징, 그리고 서울의 변화된 모습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

<표 5> 각 도별 범죄 유형

도별	經濟犯罪	官權侵害犯罪	社會風俗犯罪	人命犯罪	총 합계
강원도	1	2	1	33	37
경기도	1	2	1	113	117
경상도	8	2	1	154	165
서울	50	7	4	100	161
전라도	4		1	180	185
충청도		3	3	125	131
평안도	9	2	2	130	143
함경도		2		39	41
황해도	1	1		130	132
총 합계	74	21	13	1,004	1,112

다음으로 <표 6>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도별로 범죄의 유형을 도표화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지역별 범죄 유형의 차이를 좀더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군현을 도시지역, 농촌지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범죄 유형을 제시한 것이 <표 6>이다. 이 시기 도시와 농촌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는 적극적 단서를 현재 필자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지역 구분은 조선 후기 사회변동과 관련해서 범죄 양상이 갖는 의미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류를 시도하였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김두섭의 연구에 의거하여 1789년 당시 都市部가 1,000戶 이상되는 서울을 포함한 57개 군현을 도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¹⁵⁾

15) 김두섭은 「조선 후기 도시에 대한 인구학적 접근」, 『韓國社會學』 24(1991)에서 조선 후기 도시의 실제 호구수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호구총수』와 1914년 행정구역 개편결과 등을 토대로 都市部를 찾아냈다. 그리고 『호구총수』에서 도시부가 1,000호되는 군현 57개 지역을 추출하여 도표화하였다. 도시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는 범죄의 지역별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김두섭의 분류를 활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김두섭이 추출한 57개 도시 지역의 분포는 평안도가 가장 많고 다음이 경상도, 전라도의 순이며, 강원도는 하나도 없다. 김두섭이 제시한 조선 후기 도시부를 포함한 군현명은 다음과 같다. ① 漢城(五部) ② 경기도 開城(東部面, 西部面, 南部面, 北部面), 江華(府內面), 廣州(城內南洞, 城內北洞, 細村面) ③ 충청도 公州(東部面, 南部面, 益口谷面), 忠州(南邊面, 北邊面), 淸州(東州內面, 南州內面, 北州內面), 唐津(縣內面, 東面, 南面), 牙山(縣內面, 二北面), 扶餘(縣內面, 大方面, 蒙道面) ④ 전라도 全州(府東面, 府西面, 府南面, 府北面), 羅州(東部面, 西部面), 光州(城內里, 不動坊, 奇禮坊, 公須坊, 斗山面), 南原(長興坊, 萬北坊, 棲鳳坊, 通漢坊, 長興(府內面, 府西面), 泰仁(縣內面, 仁谷面, 興天面), 濟州(州中面), 長城(邑西面, 邑東面), 咸平(東縣內面, 西縣內面), 順天(蘇安面, 長平面) ⑤ 경상도 尙州(內東面, 內南面, 內北面), 大丘(東上面, 西上面), 晉州(城南面, 中安面), 釜山(東萊府內 釜山面, 沙川面), 慶州(邑內面), 巨濟(邑內面), 安東(府內面), 義城(南部面, 北部面), 東萊(邑內面), 密陽(府內面), 昌原(府內面), 固城(東邑內面, 西邑內面) ⑥ 황해도 海州(內東邊坊, 外東邊坊, 西邊坊), 黃州(邑內坊), 安岳(板橋坊, 細洞坊), 長淵(雪山坊, 專澤坊), 延安(西面西部坊, 南面南部坊, 東面東部坊) ⑦ 평안도 平壤(隆德部坊, 大興部坊, 內川坊, 外川坊, 林原坊), 義州(州內面), 永柔(中部面, 東部面, 西部面), 渭原(郡內坊), 安州(州內面), 宣川(邑內面), 楚山(東部坊), 定州(東部坊, 西部坊), 郭山(郡內面), 碧潼(邑內面), 昌城(府內面), 鐵山(古城面, 中和(下道坊), 嘉山(郡內面), 龍川(府內面), 肅川(東部面, 西部面) ⑧ 함경도 鏡城(梧村社), 吉州(多二社), 明川(下奧禾社), 咸興(州南社府內) 등이다.

〈표 6〉 농촌·도시의 범죄 건수

구분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	인명범죄	총 합계
農村	13	7	5	597	622
都市	61	14	8	407	490
총 합계	74	21	13	1,004	1,112

표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인명 범죄는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다. 인명범죄 1,004건 중에 농촌 지역이 597건(59.4%)인 반면, 도시 지역은 407건(40.5%)에 머물렀다.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이든 살인이 초래된 원인과 내용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선왕조의 전통적 사회질서의 변동과 해체 과정 속에서 표출된 살인 사건의 제 양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관권침해범죄, 경제범죄, 사회풍속범죄는 도시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의 범죄 108건 중에 도시 지역 83건(76.8%), 농촌 지역 25건(23.1%)으로 나타나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그런데 도시, 농촌 지역별 범죄 분포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구총수』의 1789년 口數를 확인한 결과 김두섭이 설정한 57개 도시 지역의 인구수는 2,595,622명, 농촌 지역의 인구수는 4,808,984명이다. 따라서 도시 지역의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5%, 농촌 지역은 65%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수가 도시 지역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인구수 대비 범죄비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 농촌 지역의 인구비율을 범죄비율로 나눈 것이 다음 <표 7>이다.

〈표 7〉 농촌·도시의 인구수 대비 범죄비율

구분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	인명범죄	총합계
農村	0.27	0.51	0.59	0.92	0.86
都市	2.35	1.90	1.76	1.16	1.26

앞서 <표 6>에서 인명 범죄의 건수가 농촌 지역에서 더 많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위의 <표 7>를 통해 인구수 대비 인명 범죄 발생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범죄가 도시 지역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인구수 대비 경제범죄의 발생 비율은 농촌보다 도시 지역이 10배 이상 높고, 관권침해범죄·사회풍속범죄가 농촌보다 도시 지역이 4배 가까이 높았다.

이상 <표 6>, <표 7>로부터 도시, 농촌 지역 범죄 유형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구수 대비 범죄비율이 농촌보다 도시 지역에서 높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무렵 사회적 갈등, 대립이 도시 지역에서 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의 경우 대부분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도시 지역에 특수한 범죄 양상으로 파악된다. 이상 도시, 농촌별 범죄 유형 분포는 범죄가 사회구조, 사회문화적 요인, 환경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3. 범죄인의 신분과 직역

이제 누가 범죄를 일으켰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풀 차례이다. 사형 범죄는 극단적 일탈 행위로 다양한 사회 문제와 모순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범죄인의 직역과 신분도 매우 다양하다. 필자는 『심리록』에 실려 있는 각 사건의 개요를 검토하면서 가능한 범죄인 관련 身分·職役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범죄인의 신분을 아래와 같이 兩班層, 中人·吏鄕層, 平民層, 賤民層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불행하게도 상당수의 사건은 범죄인의 신분이나 직역과 관련한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이 경우는 후술하듯이 평민층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네 개의 신분과 세부 분류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兩班層

官吏：前職 守令, 蔭官, 官人

兩班：兩班, 班族, 土班, 士夫, 幼學, 生員, 土豪, 豪強, 村豪, 功臣子孫 등

2) 中人·吏鄉層

中人：庶孽, 閑良 등

鄉任：座首, 尊位, 執綱, 面任, 里任, 里長, 里正, 店主 등

吏胥：吏胥, 驛吏, 邑吏, 武藝別監 등

下級官屬：裨將, 營差, 官差, 官隸, 官校, 捕校, 捕卒, 軍校, 軍卒, 鎭卒, 獄卒, 山城監官 등

3) 平民層

平民：常漢, 常民, 農民, 召史, 良女 등

商人：商人, 行商, 魚商 등

未詳：身分·職役 미상자

4) 賤民層

奴婢：官奴婢, 寺奴婢, 校奴婢, 院奴婢, 驛奴婢, 私奴婢 등

雇工：雇工, 雇奴

賤流：僧, 屠漢, 倡優, 津夫, 居士, 乞人 등

먼저 官吏와 兩班은 兩班層에 넣었다. 『심리록』 사건 속에는 수령을 비롯한 전현직 관원이 몇 명 등장한다. 이들 전현직 관원과 蔭官, 官人 등은 관리 항목에 넣었다. 그리고 양반은 내용 속에 ‘兩班’, ‘土豪’, ‘幼學’, ‘功臣子孫’ 등으로 표현되는 인물들이 그 속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幼學’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양반 이외의 신분층에 의한 冒稱 현상으로 18, 19세기의 ‘幼學’을 兩班의 職役으로 바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기존 연구 결과이다.¹⁶⁾ 그렇지

만 필자는 국왕에게 보고되는 獄案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冒錄의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이 시기 冒稱幼學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幼學’을 양반으로 분류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中人·吏鄕層은 양반층과 평민층의 사이에 있는 중간 신분층을 아울러서 범주화한 것이다. 중인·이향층에는 中人, 鄕任, 吏胥, 下級官屬이 속한다. 조선후기 신분사 연구에서 ‘庶擊’, ‘閑良’ 직역인은 중인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 필자도 그것을 따랐다. 아울러 수령을 보좌하는 여러 아전들은 吏胥로 분류하였으며, ‘座首’, ‘尊位’, ‘執綱’, ‘面任’, ‘里任’, ‘里長’, ‘里正’, ‘店主’ 등 수령의 통치를 보좌하는 향촌 집단은 鄕任에 넣었다. 이 鄕任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座首, 尊位, 執綱 계열과 面·里任 계열은 동일한 신분층에서 맡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역별로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정리의 편의상 따로 구분하지 않고 향임층으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이서와 향임은 때로 吏·鄕으로 병칭되기도 하였는데, 19세기 지방에서 수령-이·향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¹⁶⁾ 마지막으로 중인·이향층으로 범주화한 ‘下級官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 하급관속이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 정의에 입각한 것은 아니다. 하급관속은 중앙의 포도청이나 지방관에 소속되어 치안 및 방범 활동, 범죄인 체포 등의 일을 맡은 말단 관리에 해당하는 捕校, 捕卒, 官校, 官差, 軍卒 등을 말하는데 크게 보면 ‘吏胥’로 범주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이들 官差가 저지른 대민 마찰, 횡포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고 이 시기 살인사건의 특징적 현상 중 하나이므로 하급관속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平民層에는 平民, 商人, 身分·職役 미상자가 포함된다. 平民은 ‘常漢’, ‘常民’, ‘農民’, ‘召史’, ‘良女’ 등을 말하고, 商人은 ‘商人’, ‘行商’, ‘魚商’ 등이 속한다. 그런데 신분·직역 미상자를 평민층에 넣은 것에 대해서는

16) 崔承熙, 「조선후기 幼學·學生의 신분사적 의미」, 『國史館論叢』 1(국사편찬위원회, 1989).

17) 19세기 守令-吏·鄕 지배체제에 대해서는 고석규, 『19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 지배와 저항의 구조』(서울대 출판부, 1998)에 상세하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 『심리록』에 수록된 사건 상당수는 범죄인의 신분이나 직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양반층이거나 천민층의 경우 대체로 직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직역이나 신분 표시가 없는 경우는 평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소간의 오차를 배제할 수 없지만 신분·직역 미상자들을 평민층으로 분류하였다.¹⁸⁾

賤民層은 奴婢, 雇工, 賤流가 여기에 속한다. 노비는 官奴婢, 寺奴婢, 校奴婢, 院奴婢, 驛奴婢, 私奴婢 등이다. 그리고 고공에는 ‘雇工’, ‘雇奴’가 포함된다. 조선후기에 고공은 신분상 雇主의 奴婢인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주인가에 속하여 사역된다는 점에서 노비와 유사한 존재였다. 賤流는 노비는 아니지만 천역에 종사하는 僧, 屠漢, 倡優, 津夫, 居士, 乞人 등이 여기에 속한다.

〈표 8〉 범죄인의 신분·직역

신분		범죄 유형				총 합계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	인명범죄	
兩班層	官吏				6	6
	兩班	2		4	65	71
	합계	2		4	71	77
中人·吏鄕層	吏胥	5	4	1	11	21
	中人				3	3
	鄕任				11	11
	下級官屬	1	1	1	43	46
	합계	6	5	2	68	81
平民層	平民	3			46	49
	商人				13	13
	未詳	58	14	4	726	802
	합계	61	14	4	785	864
賤民層	雇工				4	4
	奴婢	3	2	3	48	56
	賤流	2			28	30
	합계	5	2	3	80	90
총 합계		74	21	13	1,004	1,112

18) 신분·직역 미상자들 중에는 평민층이 아닌 다른 신분층에 포함될 인물들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분류에 의하면 범죄인 중에 평민층이 실제보다 다소 과장되고 이에 반해 천민층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 네 가지 신분으로 분류한 범죄인의 분포 상황을 정리한 것이 <표 8>이다. 표에서 확인되듯이 전체 1,112건에 등장하는 범죄인은 양반층 77명(6.9%), 중인·이향층 81명(7.3%), 평민층 864명(77.7%), 천민층 90명(8.1%)으로 집계되었다.¹⁹⁾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범죄인의 비율이 평·천민층이 매우 높았다. 특히 평민층이 범죄를 주도하였다. 신분·직역 미상자를 평민층에 포함시켜 평민층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전체의 77.7%를 차지하였다. 정조대 사형 범죄의 4분의 3은 평민 신분의 범죄인이 일으킨 셈이다. 평민층 외에는 노비층, 중인·이향층, 양반층 순으로 집계되었으나 그 비율은 세 신분층이 비슷비슷하여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는다.

둘째 양반층은 네 가지 신분층 가운데 범죄인의 비율이 가장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생각보다 높았다. 『심리록』에 실린 범죄는 형조에서 관할하는 살인 등 일반 雜犯에 관한 범죄이므로 양반층의 범죄인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77명이나 확인된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양반층이 차지하는 이같은 범죄인 비율은 지배신분층인 양반도 정조대 국가의 주요한 범죄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셋째 중인·이향층, 그 가운데 특히 이서와 하급관속들의 범죄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방통치의 실무를 맡아 대민 접촉이 가장 많았던 존재라는 점에서 이들의 범죄가 갖는 내용과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인명 사건에 관련되었는데, 예컨대 하급관속 44명 중 대부분인 41명이 살인

19) 전체 1,112건 속에는 그 예가 많지 않지만 단독 범행이 아니라 여러 명이 죄를 지지를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正犯은 오직 1명만 될 수 있었다는 점과 통계의 편의를 고려하여 범죄인의 숫자는 1건 당 1명으로 처리하였다.

20) 태조에서 성종 연간의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死刑 범죄를 분석한 정태현에 의하면 전체 2,045명의 범죄인 가운데 신분을 알 수 있는 1,250명을 조사해본 결과 兩班 32명(2.7%), 中人 39명(3.1%), 良人 416명(33.3%), 賤民 767명(61.4%)이었다(鄭泰憲, 앞의 논문, 24~25쪽). 조선초기에는 양반층의 범죄 비율이 정조대보다 낮았으며, 반면 천민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에서 천민 범죄자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조선후기에 비해 당시 奴婢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죄로 기소되었다.

〈표 9〉 범죄인의 성별

범죄 유형	남	여	총 합계
經濟犯罪	74		74
官權侵害犯罪	21		21
社會風俗犯罪	12	1	13
人命犯罪	965	39	1,004
총 합계	1,072	40	1,112

범죄인의 신분·지역의 분포와 함께 또 하나 흥미를 끄는 것은 범죄인의 성별이다. <표 9>에서는 범죄인의 남녀 비율을 살펴보았다. 짐작이 가능하듯이 전체 1,112명 가운데 절대다수인 1,072명(96.4%)이 남성이며, 여성은 인명범죄 39명, 사회풍속범죄 1명 등 모두 40명(3.5%)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이 시기 범죄는 남성이 주도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이 휘두르는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폭력에 노출된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4. 재판기간과 형량

지금까지 범죄의 분포, 범죄의 유형, 범죄인의 신분 등 범죄 행위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범죄의 처리 기간, 형량 분포를 검토하기로 한다. 범죄가 기소된 이래 형이 확정되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는가? 『심리록』에는 범죄가 成獄된 연월, 정조가 判付를 내린 연월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기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표 10>, <표 11>이다.

사건이 관에 접수된 이후, 즉 成獄된 이후 정조가 첫 판부를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을 정리한 것이 <표 10>이고, 성옥된 이후 정조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걸린 기간을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다시 말하면 <표 10>은 사건을 접수하

여 형조·관찰사의 지휘 하에 사건을 처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가를 보여주며, <표 11>은 사건이 기소된 후 국왕의 확정 판결이 나기까지의 총 재판기간을 말한다. 각각의 특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표 10> 成獄~最初判付 사이의 기간

기간	범죄 유형				총 합계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	인명범죄	
1~6개월	45	18	10	239	312
6개월이상~1년	11	1		157	169
1년이상~1년6개월	8		1	159	168
1년6개월이상~2년				119	119
2년이상~3년	3			136	139
3년이상~4년	3		1	65	69
4년이상~5년	2	1		48	51
5년이상~10년	1	1	1	45	48
10년이상	1			36	37
총 합계	74	21	13	1,004	1,112
평균 기간(개월)	18.2	9	11.4	27.7	26.5

<표 11> 成獄~最終判付 사이의 기간

기간	범죄 유형				총 합계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	인명범죄	
1~6개월	24	11	4	147	186
6개월이상~1년	10	2	4	110	126
1년이상~1년6개월	9			128	137
1년6개월이상~2년	2	3	1	102	108
2년이상~3년	5		1	144	150
3년이상~4년	4	2		100	106
4년이상~5년	8			84	92
5년이상~10년	7	2	2	116	127
10년이상	5	1	1	73	80
총 합계	74	21	13	1,004	1,112
평균 기간(개월)	39.9	23.4	31.9	42.4	41.8

첫째 성옥된 이후 정조가 최초 판부를 내리기까지는 평균 26.5개월이 걸렸다. 이는 지방의 경우 관찰사, 중앙의 경우 형조가 수사를 지휘하여 각 군현과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의 세부 내용, 범죄인의 운곽을 확정하여 국왕에게 보고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평균 26.5개월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인명범죄는 관권침해범죄의 3배가 넘는 27.7개월만에 국왕 정조에게 사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명범죄가 발생한 경우 과학적 수사방법이 도입되지 못한 현실에서 사망자에 대한 몇 차례에 걸친 검시, 관련자들에 대한 계속되는 推問 과정이 이같은 긴 기간을 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옥사의 지체, 즉 ‘滯獄’이 늘 刑政의 현안으로 대두되던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건 처리가 긴 시간을 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표 10>에서 보듯이 사건이 접수된 후 6개월 이내에 국왕이 사건 판결을 내린 건수도 312건(28.1%)에 달했다. 이렇게 볼 때 5년 이상 걸려서 정조에 보고된 사건 85건이 <표 10>의 평균 기간을 늘린 원인 중 하나였다.²¹⁾

둘째 성옥된 이후 정조가 최종 판부를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 즉 사건이 관에 접수된 후 재판이 완료되기까지는 평균 41.8개월이 걸렸으며, 각 사건별 기간은 <표 11>에 보인다. 요컨대 정조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평균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던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관권침해범죄가 가장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 21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은 단 6개월만에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회풍속범죄도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을 넘지 않은 것이 전체 13건 가운데 8건을 차지할 정도로 비교적 재판 속도가 빨랐다. 반면 경제범죄는 1년 이내에 형이 확정된 것이 74건 중 34건을 차지하지만 인명범죄 다음

21) 사실 成獄 이후 정조가 최초 판부를 내리기까지 걸린 기간은 다소 과장되었다. 필자는 통계 처리 시에 最初判付는 『심리록』에 수록된 사건별로 처음 실린 판부, 最終判付는 사건의 마지막에 수록된 판부의 연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심리록』에 수록된 영조대에 일어난 사건 85건은 영조의 판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조가 처음 심리한 것으로 통계 처리되는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이후 국왕이 최초 판부를 내리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26.6개월보다 짧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또 하나 본고에서 기간을 산출할 때 閏月은 통계 처리의 편의상 고려하지 않았으며, 『심리록』에 기재된 成獄 및 判付 年月의 명백한 오류는 수정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는 점을 밝힌다.

으로 재판기간이 길어 평균 39.9개월이 소요되었다. 인명사건의 경우가 재판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전체 1,004건 가운데 5년 이상 재판이 진행된 것이 189건 (18.8%)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3건은 10년이 넘도록 죄인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못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체 재판 기간, 즉 관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국왕의 최종 판결까지 평균 41.8개월이 걸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다. 당시 조선 정부는 줄곧 ‘獄久弊生’, ‘獄老生奸’이라고 하여 옥사의 지체가 가져올 폐단을 경계하고, 滯獄을 억제하려 했지만 과학적 수사방법이나 통신 시설의 미발달, 국왕 중심의 재판운영 등은 불가피하게 3년여의 시간을 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심리록』에 수록된 사건의 대부분이 인명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오늘날에도 인명 사건의 경우 사망 원인을 확정하기 위한 부검, 각종 수사 자료 수집 및 보강 수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재판 기간 3년 6개월이 갖는 의미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범죄에 대한 국왕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범죄인의 가족·친족을 중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죄의 감형을 요구하는 상언·격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아래 <표 12>은 『심리록』 옥안과 관련해서 제기된 상언, 격쟁의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 나오는 상언, 격쟁은 범죄인 가족이 호소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피해자 가족이 범죄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도 있다.²²⁾ 표에 나오는 숫자는 소원을 제기한 사건 건수를 의미하며, 소원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 사건에 두 번의 격쟁이 있었다라도 한 건으로 처리하였다.

22) 피해자 가족이 범죄인의 조속한 처형을 요구하는 擊鑿 사례로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조운정이란 인물을 죽인 서울의 서부 이복운 옥사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사망한 조운정의 아들 조의식이 격쟁하였다(『審理錄』 권11, 서울 西部 李福雲獄). 한편 동네의 賦役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진주 이덕립 옥사에서는 사망한 심선계란 자의 처 장여인이 가해자 이덕립의 처벌을 요청하는 上言을 제기한 예이다(『審理錄』 권15, 경상도 卞州 李德林獄).

〈표 12〉 上言·擊錘의 건수

訴冤 유형	經濟犯罪	官權侵害犯罪	社會風俗犯罪	人命犯罪	총 합계
上言		1	1	25	27
擊錘	2	2	2	110	116
上言 및 擊錘				7	7
총 합계	2	3	3	142	150

상언, 격쟁 등 訴冤을 제기한 건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리 과정에서 상언 또는 격쟁이 제기된 것은 150건이었다. 전체 범죄 1,112건 가운데 13.4%는 심리 과정에 상언, 격쟁 등의 청원이 국왕 정조에게 접수된 것이다. 150건 중 상언은 27건, 격쟁은 116건, 상언과 격쟁이 함께 이루어진 것은 7건으로,²³⁾ 전체적으로 격쟁이 상언에 비해 훨씬 많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0건의 대부분인 142건(94.6%)이 인명 사건에서 이루어졌다. 이 무렵 상언·격쟁이 합법적인 청원 수단으로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⁴⁾

마지막으로 사형 대상 범죄인에게 내려진 형량 분포를 살펴보자. 정조가 내린 형량에는 해당 범죄에 대한 국왕의 입장 뿐 아니라 국왕 정조의 판결에 영향을 주었던 조정 관료들의 처벌 전략이 녹아 있다. 따라서 정조대 형사사법제도, 형사정책의 방향을 살피는데 도움을 준다. 『심리록』 형량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통계로 제시한 것이 <표 13>이다.

23) 한 사건에서 上言과 擊錘가 모두 나타나는 7건은 피의자 가족 여러 명이 상언과 격쟁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 가족이 동시에 상언·격쟁을 제기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24) 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上言·擊錘 研究』(一潮閣, 1996). 한상권의 연구에 의하면 정조대 상언·격쟁의 총 건수는 4,427건이며, 호소하는 내용에 따라 干恩(1,795건), 民隱(920건), 伸冤(577건), 山訟(574건), 立後(438건) 등으로 구분된다. 한상권의 분류에 따르면 위의 <표 12>에 나오는 상언, 격쟁은 주로 伸冤에 해당한다. 즉 정조대 577건의 伸冤을 호소한 상언·격쟁 가운데는 殺獄 142건, 기타 사형범죄 8건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3〉 범죄의 형량 분포

刑量		건수	비율(%)
死刑	死刑	36	3.2
	합계	36	3.2
減刑	減死定配	394	35.4
	減律	11	1.0
	酌處	84	7.6
	합계	489	44.0
充軍·爲奴	爲奴	20	1.8
	充軍	5	0.4
	平民降等	2	0.1
	합계	27	2.4
釋放	釋放	343	30.8
	합계	343	30.8
物故	物故	99	8.9
	합계	99	8.9
其他	逃躲	7	0.6
	不成獄	4	0.3
	移送本道	1	0.1
	移捕廳	1	0.1
	仍推	33	3.0
	합계	46	4.1
未詳	未詳	72	6.5
	합계	72	6.5
총 합계		1,112	100

형량을 <표 13>와 같이 사형, 감형, 충군·위노, 석방, 물고, 기타, 미상 7가지로 분류한 이유부터 설명이 필요하다. 먼저 정조가 형조를 비롯한 조정 관리들의 의견을 좇아 ‘依律’, 즉 율문에 의거하여 사형 집행을 명령한 것을 하나로 구분하였다.²⁵⁾ 다음으로 율문에 의거하면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작하여 ‘減死定配’, ‘減律’, ‘酌處’를 지시한 것은 ‘減刑’으로 분류

25) 사형은 絞刑과 斬刑으로 구분되지만, 『심리록』의 기록만 가지고는 명확히 알 수 없어 통계에는 사형을 교형과 참형으로 다시 세분하지 않았다.

하였다. 이 가운데 減律과 酌處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형량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형에서 감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정배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감형’은 사실상 감사정배로 파악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爲奴, 充軍, 平民降等도 사형에서 감한다는 의미에서 ‘감형’에 넣어 분류할 수 있지만, 정배된 지역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던 정배형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充軍·爲奴’로 별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심리 과정에서 무죄가 입증되거나 정상을 참작 받아 석방된 경우는 ‘釋放’,²⁶⁾ 형량을 확정하기 전에 推問 과정에서 고문, 기타 사정으로 옥중에서 사망한 경우는 ‘物故’로 분류하였다. 이밖에 죄수가 도망가거나(逃竄), 옥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不成獄), 사건을 발생지역 관찰사에게 돌려보낸 경우(移送本道), 포도청으로 이첩한 경우(移捕廳), 좀더 심리를 진행할 것을 하달한 경우(仍推) 등은 이후 확정된 형량을 알 수는 없지만 ‘미상’과 구분하여 ‘기타’로 분류하였다.

위 각 범죄에 대한 형량 분포를 보여주는 표를 읽으면서 당혹스러운 것은 조선시대 이른바 ‘殺人者死’의 일반율은 정조대에는 전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형에 해당하는 전체 범죄인 1,112명 가운데 36명, 즉 3.2%만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15세기 사형 범죄를 분석한 정태현이 전체 2,045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917명(93.7%)이 실제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통계한 사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발견된다.²⁷⁾

物故는 8.9%(99명)에 달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에는 수감 생활의 고통은 매우 컸다. 피의자에 대한 음식물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각종 전염병이 창궐

26) ‘釋放’의 범주에는 無罪放免 뿐 아니라 嚴刑後 釋放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嚴刑後 釋放은 ‘嚴刑一次後 釋放’, ‘嚴刑三次後 釋放’ 등 죄인을 석방시키기 전에 몇 차례의 刑訊을 가하도록 하는 판결을 말하며, 실제로 『심리록』에 실린 정조의 判付에는 이같은 지시가 적지 않았다.

27)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태현은 태조에서 성종 연간 사형 범죄인 2,045명의 범죄 유형, 형량 등을 분석하였다. 정태현의 분석에 의하면 2,045명 가운데 128명(6.3%)만이 사형을 면하고, 나머지 1,917명(93.7%)은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특히 사형을 언도받은 자들의 대부분은 斬刑(1,406명)이다. 그 다음이 絞刑 369명이며 凌遲處死도 142명에 달하였다(鄭泰憲, 앞의 논문, 27~31쪽).

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심문 과정에서 고문을 받게 됨으로써 감옥 내에서 병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형과 물고의 이같은 비율은 형이 확정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것보다 오히려 심리 과정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사형을 언도받은 자가 적다는 점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상당수가 감형(489건, 44%)되고 있으며, 석방자의 수도 343명으로 30.8%에 달했다. 『심리록』 수록 범죄인들은 대부분 사형에 처할 반사회적, 극단적 일탈 행위를 감행한 범죄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범죄인의 상당수가 석방되고, 감형되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변화이다.

심리와 판결 과정은 당시 조선왕조 범죄통제의 구체적인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감형과 석방을 합친 비율이 전체의 74.8%라는 것은 조선초기의 사례와 비교해볼 때 분명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조선후기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국왕 정조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이 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추진한 ‘관용’과 ‘사면’의 정치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²⁸⁾

IV. 맺음말

앞에서 정조대 사형 범죄인들의 심리 기록인 『심리록』 수록 범죄의 다양한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검토 과정에서 우리는 조선후기 사회 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갈등이 범죄로 표출되었으며, 『審理錄』 판결 속에서 확인된 正祖의 寬刑主義的 판결은 이전 시기의 형사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먼저 범죄 분포를 살펴보면 『심리록』에 수록된 정조가 재위 기간 동안 심리

28) 정조대 사형범죄 심리의 특징과 판결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심재우, 앞의 논문 참조

한 사건은 모두 1,112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년에 평균 45.4건, 매달 3.8건의 사형 범죄를 정조가 심리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도가 가장 많은 185건이지만, 인구수 대비 범죄심리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높았다. 그만큼 서울이 사람들 간의 관계, 사회적 갈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범죄의 유형은 살인·자살 등 人命犯罪를 비롯하여 經濟犯罪, 官權侵害犯罪, 社會風俗犯罪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이 가운데 인명범죄가 가장 많아 전체의 90.3%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경제범죄 6.7%이다. 관권침해범죄(1.9%), 사회풍속범죄(1.2%)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모든 군현을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나누어 범죄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건수만으로는 인명범죄는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경제범죄, 관권침해범죄, 사회풍속범죄는 도시 지역에서 월등히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인구수 대비 범죄 발생 비율은 도시 지역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적 양상과 범죄 발생 빈도가 일정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여준다.

범죄인의 신분은 크게 兩班層, 中人·吏鄕層, 平民層, 賤民層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범죄를 일으킨 자는 평민층이 가장 많은 77.7%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천민층 8.1%, 중인·이향층 7.3%, 양반층 6.9%이다. 평·천민층이 범죄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지만, 양반층 범죄인들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범죄인의 성별은 예상할 수 있듯이 남자가 대부분(96.4%)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것이 재판기간과 형량이다. 재판 기간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관에 접수되어 국왕 정조에게 보고되기까지 평균 26.5개월, 기소되어 국왕의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평균 41.8개월이 걸렸다. 그리고 국왕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에 범죄인의 가족과 친족을 중심으로 上言·擊鎗을 제기한 건수는 전체 1,112건 가운데 150건으로 13.4%를 차지하여 이 무렵 상언·격쟁이 합법적 청원수단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

리를 거쳐 정조가 내린 최종 형량 분석 결과 死刑은 3.2%에 불과하였고, 減刑 44%, 釋放 30.8%, 物故 8.9% 등으로 나타났다. 즉 사형 판결이 극히 적었고, 감형과 석방을 합친 비율이 전체의 74.8%에 달하였다.

이상 정조대 『심리록』 수록 범죄 양상과 처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선후기 사회변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대립이 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었으며, 정조는 이들 사형 범죄인에게 엄벌이 아닌 관대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변동기 사회적 갈등의 완화를 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rimes occurred in the Late 18th Century

—Focusing the Analysis of Simrirok—

Sim, Jae-Woo*

This study constitutes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methods of social control adopted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of the Joseon Dynasty, based on the analysis of Simrirok, a record of 1,112 felony trials.

This study is chiefly comprised of the following. The king handled a total of 1,112 trials during his reign, with Jeolla Province accounting for the largest number of felony cases (185 cases). In terms of the crime rate by population, Seoul topped the other regions. By type, felonies were divided into murder (90.3%), economy-related actions (6.7%), those involving challenges to government authority (1.9%), and those committed against public morality (1.2%). It also appears that the crime rate per population was higher in urban areas than in rural areas.

In terms of the social position of the felons in question, it would appear that commoners accounted for the lion's share (77.7%) of the felonies committed, followed by 'untouchables' (8.1%), those acting as assistants to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7.3%), and members of the nobility (6.9%). It would also appear that it took an average of 26.5 months for a felony case to be placed before the king and an average of 41.8 months to reach a final judgment. Penalties ranged from executions (3.2%), mitigated sentences (44%), and pardons (30.8%) to death in prison while awaiting

* a curator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judgment (8.9%), thereby revealing that the king made a majority of lenient judgments in felony cases.

[**Key Words**] Simrirok, felony, trail, judgment